

『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추진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(안 제1조~제2조)
-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「구미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은

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,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, 위원회의 위촉, 위원장의 선출, 간사의 임명, 위원회의 임기,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,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